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5
----------	-----

제출년월일 : 2013.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가. 국제교류센터의 명칭을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교류사업 시행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인의 명칭이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18조 및 제20조)
- 나. 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16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이하 “국제교류센터”라 한다)를”을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을”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국제교류센터”를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이하 “국제교류재단”이라 한다)”로, “민법”을 “「민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국제교류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

여 선임하되”를 “따라 선임하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조 중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1월전”을 “1개월 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와 ”를 “또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센터는”을 “국제교류재단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가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3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협의회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를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인천국제교류센터”를 “인천국제교류재단”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를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재단”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다목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이하 “국제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 (설립) 국제교류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설립한다.</p> <p>제4조 (대상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시</u>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3. ~ 9. (생략) 10. <u>기타</u>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p>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p> <p>제1조 (목적)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을 ----- 운영에 ----- -----.</p> <p>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이하 “국제교류재단”이라 한다)----- 「민법」----- ----- 따른다.</p> <p>제3조 (설립)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에 따른 ----- -----.</p> <p>제4조 (대상사업)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인천광역시</u>(이하 “시”라 한다)----- 3. ~ 9. (현행과 같음) 10. <u>그 밖에</u> ----- -----

현행	개정안
<p>제5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u>범위안</u>에서 시장의 승인을 <u>얻어</u>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5조 (수익사업) ----- ----- ----- <u>범위</u> ----- -- <u>받아</u> -----.</p>
<p>제6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u>각호</u>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략)</p>	<p>제6조 (정관) ----- <u>각 호</u>----- -----. 1. ~ 10. (현행과 같음)</p>
<p>제7조 (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 선임하되</u>,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p>	<p>제7조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른다</u>. ③ ----- ----- <u>따라 선임하며</u> -----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 (고문) ① 법인에는 <u>5인</u>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p>	<p>제8조 (고문) ① ----- <u>5명</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u>통할</u>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④ (생략)</p>	<p>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총괄</u> -----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u>유고시</u>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p>

현행	개정안
제11조 (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직원) ----- ----- <u>따라</u> ----- -----.
제12조 (운영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 사업수익금 및 <u>기타</u>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운영재원) ----- ----- ----- <u>그 밖의</u> ----- -----.
제14조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u>의한다</u> .	제14조 (사업연도) ----- ----- <u>따른다</u> .
제15조 (세입·세출 승인 및 의회보고)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u>1월 전</u> 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u>이와</u> 같다. ② 시장은 <u>제1항에</u> 의거 승인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세입·세출 승인 및 의회보고) ① ----- <u>1개월 전</u> ----- ----- ----- <u>또한</u> -----. ② ----- <u>제1항에 따라</u> ----- -----.
제16조 (결산서 제출) 법인은 <u>매회계</u> 연도 종료 후 <u>3월</u>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서 제출) ----- <u>매 회계</u> 연도 ----- <u>2개월</u> ----- ----- -----.
제18조(국제관계자문) <u>국제교류센터</u> 는 다음 <u>각호</u> 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기타</u>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18조(국제관계자문) <u>국제교류재단</u> 은 ----- <u>각 호</u>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현행	개정안
제19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u>제18조</u>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실적부 비치) ----- <u>제18조에 따라</u> ----- ----- -----.
제20조(자료제공) <u>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u> 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공) <u>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u> 가 제18조에 따른 ----- ----- -----.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u>의하여</u>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 ----- <u>따라</u> ----- ----- -----.
제2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u>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 ----- -----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 ----- ----- -----.
제23조 (운영규정) 법인의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u>범위</u> 안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규정) ----- <u>운영에</u> ----- ----- ----- <u>범위</u>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p> <p>○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p>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민법</p> <p>○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p> <p>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p> <p>○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p> <p>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개정안은 국제교류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관 유병윤